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1015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20. 3.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3. 31. 접수 제203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영범

[별지]

토지의 표시

- 1. 부산 강서구 C 임야 2,024㎡
(목적: B 지분 1/2). 끝.

별지

청 구 원 인

1. 고의 보증과 소외 금융기관의 대출

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D
을 경영하던 소외 B(이하 위 B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B이 소외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1> 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게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B은 아래
<표2> 와 같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표1. 보증내역> (단위 :)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F	297,500,000	2010. 12. 16.	2020. 7. 30.	일반자금대출	E은행 녹산공단지점

<표2. 대출내역> (단위 :)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F	297,500,000	E은행 녹산공단지점	2010. 12. 21.	350,000,000

2. 고의 대위변제

가. 그런데 D을 경영하던 위 B의 2020. 5. 11.경 부실[이자연채등] 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고는 E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과 같이 E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고는 위 B로부터 그 대위변제 합계액을 상환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표3. 대위변제내역>

(단위 :)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금	이 자	구상금합계
1	F	2020. 7. 31.	260,000,000	3,687,666	263,687,666
합계			260,000,000	3,687,666	263,687,666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고와 위 B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아래 <표4> 와 같습니다.

<표4. 지연손해금율 내역>

기 간	이율(연)	비 고
대위변제일로부터 - 현재까지	8%	금리자율화에 따른 고 소정율

3. 대위변제금잔액 및 확정지연손해금

고와 위 B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고는 위 B로부터 금 77,187,203 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 및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아래 <표5> 와 같습니다.

<표5. 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

(단위 :)

순번	보증번호	발생금액	회수금액	잔 액	확정지연손해금
1	F	263,687,666	77,187,203	186,500,463	16,974
합계		263,687,666	77,187,203	186,500,463	16,974

4. 법적절차비용

고와 위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 10조에 의하면 고가 위 B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위 B가 이를 고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바, 고가 위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은 금 952,752 입니다.

5. 구상채권 합계

그러므로 위 B은 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86,500,463 과 위 확정지연손해금 16,974 , 위 법적절차비용 952,752 등 합계금 187,470,189 (위 대위변제금 186,500,463 + 위 확정지연손해금 16,974 + 위 법적절차비용 952,752)과 위 대위변제금 186,500,463 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신용보증기금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지급명령

고는 위 구상금의 채권과 관련하여 위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 동부지 2020차전 50375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2020. 12. 8. 인용되어 그 무렵경 확정되었습니다.

7. 소외 B과 피고간의 사해행위

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는 D를 경영하던 위 B의 2020. 5. 11.경 신용보증 사고[이자연채등]로 인하여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위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직전인 2020. 3. 30.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인 고가 강제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임차인인 피고와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0.경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20. 3. 31.경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 서부지 등기와 접수 제 20398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0 ,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당시 위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담보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 한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 하거나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담보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위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고등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역시 고등을 해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상회복으로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이에 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